

# 노사발전재단 공고

##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3차 모집 공고

노사발전재단은 기업 내 안정적인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안착을 위해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모집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26.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26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 사업목적: 기업 내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제도 안착 및 이행 지원
- 운영기관: 노사발전재단
- 지원규모: 총 300개소
- 지원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기업 및 제도 도입·개선 희망 기업

#### 기업컨설팅 신청 자격

- ① (우선기준)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을 희망하는 100~999인 기업
-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1,000인 이상 의무대상기업
- ③ 신규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업단지 내 중견·중소기업이 공동참여
  - (원·하청 등) 대표기업은 100인 이상, 참여기업은 100인 미만도 참여 가능
  - ※ 같은 업종 관계사 등이 지원하는 경우도 참여 가능
  - (중소산단) 중소 산업단지 내 유사 업종 또는 유사한 기업 환경을 가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청 시 100인 이상 기업이 1개소 이상이면, 참여기업은 100인 미만도 참여 가능

**<공통>** · 기업컨설팅(기초, 전문)에 모두 참여하였다도 추가 지원 가능

- 대기업이 관계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하는 경우 지원은 가능하나, 동일하거나 연관된 사업을 수행하고 서비스 대상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대기업이 계열사 및 자회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은 불가하나, 대기업이 같은 업종 및 지역 등의 관계사와 공동으로 컨설팅 신청 시 일부 자회사 및 계열사 포함 가능

※ 위의 ①~③에 해당하는 기업 규모는 전년도 기준으로 매월 산정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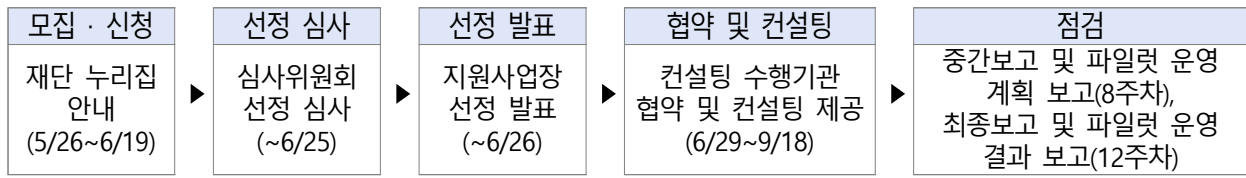
####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신청제한>

-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가(지방행정) 기관은 컨설팅 참여 신청 불가
- ②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은 참여 불가
- ③ 최근 3년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기업 및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기업은 참여 불가

- 지원내용: 컨설팅수행기관을 통해 사업장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 도입 및 설계, 운영 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등 관련 컨설팅 제공

구분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대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등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li> <li>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li> <li>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li> <li>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li> <li>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li> <li>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체계 강화</li> <li>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li> </ul>

□ 사업절차



**2 신청방법 및 선정**

□ 모집개요

○ 신청기간: 2026. 5. 26. ~ 2026. 6. 19. \* 컨설팅 기간: '26. 6. 29. ~ 9. 18.

○ 신청방법

① 단일기업 신청

- **온라인 신청:** 노사발전재단 누리집([www.nosa.or.kr](http://www.nosa.or.kr)) > 사업소개 > 중장년고용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 페이지 하단 기업컨설팅(재취업지원서비스) 신청하기에서 접수
- 단일기업 신청 서류

NO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1	기업컨설팅 신청서	<b>재단 누리집에서 신청서 인쇄 → 직인 날인 후 파일 업로드</b>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3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첨부
4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b>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피보험자수 증빙서류 제출</b>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 > '고용보험월별피보험자수' 검정박스 클릭 > 입력한 사업자 등록번호와 '25년도 피보험자수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
5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b>재단 누리집에서 신청 시 동의 체크</b>

②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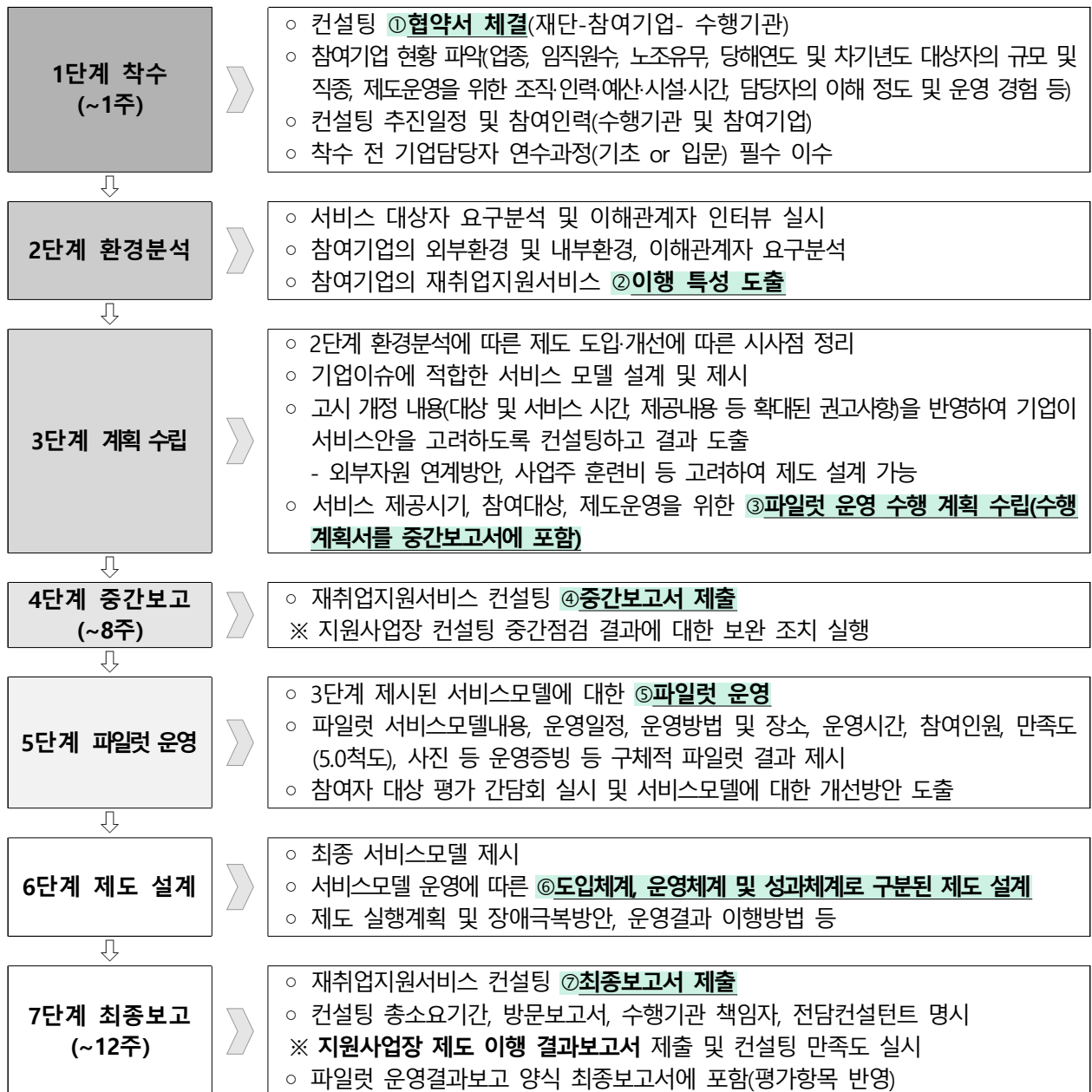
- **E-MAIL 신청:** [newstart@nosa.or.kr](mailto:newstart@nosa.or.kr)
- 원·하청 등 관계사 공동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 신청 서류(공동참여 기업 모두 제출)  
※ 본 사업의 교육·컨설팅은 정보 제공과 역량 강화, 제도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업무 지휘나 근로 제공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님. 공동참여 시 참여 사업장 근로자에게 컨설팅·파일럿 프로그램 참여를 강제하거나 계약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주의

NO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방법
1	기업컨설팅 공동참여 신청서	<b>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b>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3	고용보험 완납증명원	신청일 전 1개월 이내 고용보험 완납 증명원 첨부
4	고용보험 월별 피보험자 수 증빙	<b>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전년도 피보험자수 증빙서류 제출</b>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털서비스 > 정보조회 >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현황조회 > '고용보험월별피보험자수' 검정박스 클릭 > 입력한 사업자 등록번호와 '25년도 피보험자수가 함께 보이도록 캡처
5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b>재단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b>

- 컨설팅 비용: **전액 무료**
- 컨설팅 방식: 컨설팅 수행기관 전문컨설턴트가 직접 컨설팅 수행
- 구비서류
  - 신청관련 서류는 지원사업장 선정에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므로 정확하고 성실하게 작성하여야 함
  - 구비서류의 원본 필요시, 재단은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3 컨설팅 프로세스 및 분야

#### ○ 단일기업 컨설팅 프로세스



\* 컨설팅 제공기간은 평균 12주이며, 컨설팅수행기관과 기업 협의를 통해 탄력적 운영 가능

○ 원·하청 및 중소 산단 기업 공동컨설팅 프로세스

- 컨설팅 과정을 공동 운영에 참여하는 기업 여건에 맞게 선택적 운영

1단계 (현황분석 및 수요조사)	2단계 (서비스 제공)	3단계 (최종 결과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협의체 구성</li> <li>• 참여기업 현황 파악(업종, 근로자수, 대상자 규모 등)</li> <li>• 서비스 대상자 이해관계자 요구조사</li> <li>• 기존 제도운영 현황 분석</li> <li>• 공동 운영에 따른 역할 분담 및 고려 사항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서비스 내용, 대상 및 참여인원, 운영 일정 및 방법 등)</li> <li>•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집체교육상담)</li> <li>•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평가간담회 실시</li> <li>• 개선사항 도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 서비스 운영 결과 분석 (참여율, 만족도, 주요 성과 등)</li> <li>• 개선사항 및 지속운영 방안 제언</li> <li>• 참여기업 제도이행 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재단) 실시</li> <li>• 성과 및 향후 계획 포함 최종 결과 보고서 제출</li> </ul>

○ 컨설팅 분야: 기초컨설팅, 전문컨설팅 중 선택

※ 공동 신청의 경우 원·하청 공동참여, 중소 산단 공동참여 중 선택

구 분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내용	
컨 설 팅  세 부 내 용	기 초 컨 설 팅	대상 (우선순위)	(1)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없는 기업 (2)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은 있으나 최근 3년간 실시한 경험이 없는 기업 (3)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은 있으나, 법령 등 요건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기업 (4) 기타, 희망하는 기업
		내용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인식 개선 - 경영진, 서비스 대상자 등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 내용, 의무제도 시행 등 서비스 이해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도입 체계 구축 - 서비스 대상자 선정, 서비스 종류 및 주관기관 결정 등 서비스 도입을 위한 기본적인 체계 수립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구축 - 기업여건, 업·직종 특성 등에 따른 <b>적합한 서비스 유형(진로설계, 취업 및 창업교육, 취업알선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상담 등 운영 체계 수립</b> - 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점검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성과평가 체계 구축 - 서비스 종류에 따른 적합한 성과평가 체계 수립 ※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프로그램 제공
	전 문 컨 설 팅	대상 (우선순위)	(1)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 경험이 있는 기업 (2) 전년도 기초컨설팅 참여기업 (3) 기타, 희망하는 기업
		내용	① 재취업지원서비스 개선사항 진단 - 기존에 도입하여 운영되고 있는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한 <b>개선 사항 도출 및 보완 전략 수립</b> - 정부지원제도 활용 방안 점검 ② 재취업지원서비스 전담인력 역량강화 - 기업담당자 교육 연계 및 1:1 전문가 코칭 ③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체계 강화 - 연령별 세분화된 서비스 운영 및 생애주제별 심층상담 지원 체계 수립 ④ 재취업지원서비스 유형별 성과관리 진단 - 서비스 성과 환류에 따른 관리 방안 강화 ※ 재취업지원서비스 파일럿프로그램 제공

## 4

### 컨설팅 수행기관

○ 수행기관 선택: 기업컨설팅 신청 시 10개사 중 택일

- '무관' 선택 기업은 컨설팅 수행기관 임의 배정 후 선정 시 개별 통보

번호	기관명 (가나다 순)	홈페이지	전화번호	이메일
1	스텝스(주)	www.staffs.co.kr	02-2178-8065	newstart@staffs.co.kr
2	(주)에이케이지	www.akgkorea.co.kr	02-552-5560	kicheol.jeong@akgkorea.co.kr
3	(주)임팩트그룹코리아	www.impactgroup.co.kr	02-6205-9063	newstart@impactgroup.co.kr
4	(주)제이비컴	www.jbcom.kr	043-715-6760	jbcom1004@hanmail.net
5	(주)제이엠커리어	www.jmcareer.co.kr	02-2284-0077(3766)	ythwang@jmcareer.co.kr
6	(주)지에스씨넷	www.gscnet.co.kr	044-864-1490 (02-597-1949)	dahiyoun@gscnet.co.kr
7	케이잡스(주)	www.kjobs.co.kr	02-797-5659	h.douze@kjobs.co.kr
8	한국경영인증원	www.ikmr.co.kr	02-6309-9084	ihj96@ikmr.co.kr
9	(사)한국능률협회	www.kma.or.kr	02-3274-9207	happywithu@kma.or.kr
10	한국표준협회	www.ksare.or.kr	02-6240-4751	keh0206@ksa.or.kr

## 5

### 지원사업장 선정기준 및 결과 발표

□ 선정심사: 2026. 6. 25.(목)

○ 심사방식: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장 심사기준에 따라 사업장별 컨설팅 지원 적격 여부 결정

□ 선정기업 참여 협조

○ 필요시 사전 유선진단(심사 및 컨설팅 수행 기초자료 활용)이 진행될 수 있음

○ 선정일로부터 2주 이내 협약서 체결 노력

○ 재취업지원서비스 설계를 위한 요구조사,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컨설팅 점검, 사례 공유 등 성실 참여

○ 지원사업장 담당자는 '기업담당자 연수 과정' 이러닝 이수 후 수수료증 필수 제출(1개 과정)

□ 결과발표: 2026. 6. 26.(금)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게시

문의: 노사발전재단 전직지원팀 (T.02-6021- 1135, 1157)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협약서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함)과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참여기업(이하 "지원사업장"이라 함), 지원사업장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함)은 재취업 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총괄기관"과 "지원사업장", "수행기관"의 상호 협조 및 지원에 대한 제반사항과 임무를 규정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내용)** "수행기관"은 "지원사업장"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을 제공한다.

**제 3 조 (역할 및 책임)** "수행기관"은 컨설팅 수행 중 변동 사항 발생에 따라 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총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지원사업장"은 "총괄기관"과 "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컨설팅 관련 자료제공, 설문조사, 컨설팅 점검, 현장점검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사례 공유 등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

**제 4 조 (기간)** 본 컨설팅은 서명일로부터 컨설팅 프로세스 기준에 따라 12주간 지원한다. "수행기관"은 컨설팅 완료일로부터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제출할 때까지 최소 1회 이상 "지원사업장"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제 5 조 (비용)** 본 컨설팅의 비용은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6 조 (청렴실천)** 본 컨설팅을 시행하는 "수행기관"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됨을 깊이 인식하여 상호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한다.

**제 7 조 (보안)** 본 협약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사업장 정보, 컨설팅 내용 등 관련 정보는 상호 보안을 유지한다.

**제 8 조 (상호 협조)** 본 컨설팅이 종료된 후에도 "수행기관"과 "지원사업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총괄기관"에서 컨설팅 관련 홍보, 성과조사, 사례전파를 위한 사업장 취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 및 "지원사업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 (소유권)** 컨설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한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총괄기관"이 가지며, 컨설팅 사례 발표 및 제공 등 대외적 활용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총괄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 10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총괄기관", "지원사업장", "수행기관"이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2026년 월 일

**총괄기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종필 (인)

**지원사업장**  
 (주)000  
 대표 000 (인)

**수행기관**  
 (주)0000  
 대표 000 (인)

#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공동 협약서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총괄기관”이라 함)과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참여기업(이하 “지원업장”이라 함), 지원사업장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함)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수행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 조 (목적)** 본 협약은 중소 산단 내 사업장이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 및 현장 정착을 도모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서비스의 실효성과 성과를 제고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과 임무를 규정하며, 이를 성실히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협약 당사자)** 본 협약의 대표사업장 및 참여사업장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사업장”이란 기업컨설팅의 공동 참여 주체로서 컨설팅 과정 전반을 총괄하는 대표사업장을 말한다.
2. “참여사업장”이란 기업컨설팅의 공동 참여 주체로서 대표사업장과 협력하여 컨설팅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구분	회사명	대표자명	주소
대표사업장			
참여사업장			
참여사업장			
참여사업장			

**제 3 조 (기간)** 본 컨설팅은 서명일로부터 컨설팅 프로세스 기준에 따라 12주간 지원한다. “수행기관”은 컨설팅 완료일로부터 사업주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를 제출할 때까지 최소 1회 이상 “대표사업장”을 방문하여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제 4 조 (대표사업장의 역할 및 책임)** 대표사업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의 공동 참여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1.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참여에 대한 총괄 관리 및 참여사업장과의 협력체계 구축
2. 참여사업장의 컨설팅 및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내부 조율 및 참여 독려
3. 컨설팅 추진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자료 협조
4.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제도개선 및 현장 적용 노력
5. 컨설팅 관련 자료제공, 설문조사, 점검,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사례 공유 등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제공에 적극 협조
6. 기타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5 조 (참여사업장의 역할 및 책임)** 참여사업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의 공동 참여 주체로서 다음 각 호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한다.

1. 대표사업장과의 협력체계 유지 및 공동 성과 창출을 위한 협조
2.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
3. 컨설팅 관련 자료제공, 설문조사, 점검,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 사례 공유 등 컨설팅 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인프라 제공에 적극 협조
4. 컨설팅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 및 현장 적용 노력
5.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6. 기타 재취업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6 조 (공동 협력 사항) 대표사업장과 참여사업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동으로 협력한다.

1.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현황 진단 및 개선 과제 도출
2. 공동 참여형 컨설팅 모델 구축 및 운영
3. 컨설팅 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
4. 필요 시 정기 또는 수시 협의체 구성·운영

제 7 조 (비용) 본 컨설팅의 비용은 무료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조 (청렴실천) 본 컨설팅을 시행하는 “수행기관”은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됨을 깊이 인식하여 상호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한다.

제 9 조 (보안) 본 협약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사업장 정보, 컨설팅 내용 등 관련 정보는 상호 보안을 유지한다.

제 10 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본 협약서의 내용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

②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당사자는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11 조 (분쟁 해결)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12 조 (상호 협조) 본 컨설팅이 종료된 후에도 “수행기관”과 “대표사업장” 및 “참여사업장”은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과 관련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또한 “총괄기관”에서 컨설팅 관련 홍보, 성과조사, 사례전파를 위한 사업장 취재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행기관” 및 “대표사업장”, “참여사업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 13 조 (소유권) 컨설팅 수행의 결과로 발생한 일체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총괄기관”이 가지며, 컨설팅 사례 발표 및 제공 등 대외적 활용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총괄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 14 조 (기타 사항)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른다.

제 15 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총괄기관”, “대표사업장”, “참여사업장”, “수행기관”이 협약서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한다.

2026년 월 일

총괄기관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박종필 (인)

수행기관  
(주)0000  
대표 000 (인)

대표사업장  
(주)000  
대표 000 (인)

참여사업장  
(주)000  
대표 000 (인)

참여사업장  
(주)000  
대표 000 (인)

참여사업장  
(주)000  
대표 000 (인)



